◉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-1029호

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3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1650호, 2026.5.19. 공포, 11.20. 시행)에 따라,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공공서비스 수행 시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,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, 이익잉여금의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(참조: 경영총괄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30114)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,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
- 전자우편: ojy111@korea.kr
- 팩스: 0505 – 005 – 1001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(http://www.koreapost.go.kr) 「열린경영 - 법령정보 - 입법예고」를 참고하시거나,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(044-200-812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